

해외환경규제동향

2006
8

'해외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Monthly Newsletter VOL.24



EU, 차세대 환경정책으로 '생태효율성' 강조

- 현 의장국 핀란드 주도로 생태효율성 강조한 차세대 환경정책 논의 개시 -



향후 EU 환경정책에서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 강조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4~16일, 핀란드 투르크(Turku)에서 현 EU 의장국인 핀란드의 주최로 비공식 환경 각료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번 비공식 회합에서 유럽 환경장관들은 의장국 핀란드가 세계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효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안한 '차세대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핀란드는 세계화가 자연생태계 파괴 및 중요자원 고갈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 의장국으로서 수입기간인 6개월 동안 새로운 초점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차세대 환경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태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 마련 필요성을 주장하는 핀란드의 이니셔티브는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생태효율성 개선), ▲ 역내 시장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EU 환경정책을 지구전체의 필요에 기초한 정책으로 전환,

▲ 법률제정에 효과적인 시장도구와 이해관계자 및 사회단체와의 협의 등을 결합시키는 좀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실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핀란드는 'less is more'라는 슬로건 아래, 생태효율성을 촉진하고,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을 EU 모든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환경정책 계획을 이번 비공식 각료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논의를 개시했다.

논의를 주도한 핀란드 환경장관은 지속가능 생산 및 소비에 대한 EU 행동계획의 세부 이행조치로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정한 물질 및 에너지 효율 목표에 기초한 생태효율 전략 마련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녹색조달 및 친환경 기술 촉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격에 환경비용의 반영 등과 같은 시장원리에 근거한 정책 도구를 활용해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투르크 회의에서는 또한, 좀더 장기적인 관점의 EU 주요 환경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중요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동참하는 새로운 포럼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유엔 환경 기구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Organization)'와 '기후변화에

〈2면 하단〉에 계속

CONTENTS

헤드라인

1 EU, 차세대 환경정책으로 '생태효율성' 강조

해외동향

- 2 영국, 일반국민에게도 CO₂ 배출권거래제 시행 검토
- 중국판 RoHS 핵심규정 및 관련 표준 제정 현황
-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배터리지침 개정안에 합의
- 스위스, EU 관련 법규에 자국 화학물질 위험 저감법 부합화 추진
- 미국, 친환경컴퓨터 정보 제공시스템 EPEAT 운영 개시
- 미 워싱턴주,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인산염 사용 제한

새 간행물

6 EU 집행위, 소비자제품에 대한 REACH 가이드선 발표

주요단신

- 7 소니, WWF와 선도적인 CO₂ 배출 감축 위한 협약 체결
- EU, 소비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22종의 모바일 검색제 사용금지
-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회담 재개
- 일본, 가전리사이클링법 개정 검토
- 네덜란드, 자동차 환경성에 따라 등록세 차등 부과

관련 국제회의 정보

1
2
6
7
8



영국, 일반국민에게도 CO₂ 배출권거래제 시행 검토

영국정부가 민간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자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고려 중이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의 Miliband 환경국장은 지난 7월 19일 열린 감사원 연례 강연에서 이러한 개인부문 배출거래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개인에게 일정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감축분에 대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 실시의 효과를 장담하면서,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는 세금인상보다 더 효과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별 이산화탄소 할당 대상에는 전기, 가스, 석유 및 비행기 여행을 통한 일반인의 직접적인 에너지사용이 포함되며, 이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영국 내 총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경우, 탄소가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써 통용되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은 화폐와 탄소 배출권이 적립된 은행카드를 소지하고 다니게 될 것이다. 즉, 전기나 가스, 연료 구입시 화폐와 함께 탄소 배출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 Defra 측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활

동에 대한 금지조치나 과도한 세금부과 등의 규제 정책보다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영국정부는 이 제도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구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곧,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친환경연료 등 친환경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직결될 것으로 보여져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전체에서 약 1만 2천개의 시설이 참여하는 산업계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영국 내에서만 몇 백만이 참여하게 될 개인부문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계를 대상으로 이미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게 될 이 제도 시행을 두고 영국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그 실행가능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영국 Defra



〈헤드라인〉에 이어서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과 같은 형태의 '자연자원에 대한 패널 (Panel on Natural Resources)' 의 창설을 핀란드가 제안했다. 핀란드는 차세대 환경정책의 핵심 사항으로 생태효율성의 강조 외에도, 환경세(ecotaxes) 증대 및 불필요한 보조금의 폐지를 주장했다.

비공식 환경 각료이사회 회합결과는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회의에서 권고된 사항들은 올해 가을에 실시되는 6차 환경행동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에서 폭넓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 Ecology와 Economic에서의 'Eco-'와 효율을 나타내는 'efficiency'의 합성어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용어. 효율적인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이라는 생태적 발전요소와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 발전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효율적 자연자원 사용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 국내에서는 환경효율, 환경적 효율성, 에코효율, 환경경제효율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

출처 | EU 의장국 핀란드, Euractiv 등



중국판 RoHS 핵심규정 및 관련 표준제정 현황

중국판 RoHS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이 지난 2월 28일 공포된 이후, 주무부처인 중국 정보산업부가 '전자정보제품' 정의 목록 및 법규 FAQ를 발표하는 등 법률 시행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법의 주요 핵심규정과 이의 시행을 위한 관련 이행수단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판 RoHS의 경우, 유해물질 제한은 별도의 '우선관리대상 전자정보제품 목록(중점관리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전자정보제품은 유해물질 제한 뿐만 아니라, 시장판매 전 시험분석과 강제인증의 대상이 된다. 또한, 중국판 RoHS는 대상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링 및 정보공개 요구 규정을 두고 있다.

법규 본격 시행은 2007년 3월 1일부터다. 하지만, 시행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존재하는데, 먼저 내년 3월 1일부터는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만이 적용된다. 유해물질 제한 및 사전인증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중점관리 목록에서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어서, 내년 3월 1일 보다 훨씬 나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정보산업부는 아직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 제한 및 사전인증 규정에 대한 시행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라벨링 및 정보공개

정보산업부는 올 3월 16일, 전자정보제품으로 정의되는 1,400여종의 세부제품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자정보제품 정의 목록을 중국판 RoHS의 유해물질 제한 및 사전인증 규정이 적용될 '중점관리목록'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있다. 이 세부제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 부품 및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중국판 RoHS의 제품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은 발표된 세부제품 목록은 법규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보제품' 해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목적으로 제시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및 부품이라고 해도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라벨링 및 정보공개 요건으로는 ▲ '환경을 고려한 사용기간'을 제품에 표기하고, 관련 세부 설명을 제품 설명서에 명기(법규 제3조 5항, 제11, 12조), ▲ 유해물질 명과 함량,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 표기(법규 제13조), ▲ 포장재질 표시(법규 제14조)가 포함된다.

현재 적용대상 제품의 라벨링 및 정보공개 이행수단으로 마

련되고 있는 표준은 ▲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를 위한 표시 (Marking for the Control of Pollution Caused by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SJ/TXXXX-2006]와 ▲ 환경적 사용기간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이 표준의 명칭은 아직 미확정)이다. 라벨링 표준[SJ/TXXXX-2006] 최종안은 최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정보산업부 산하 '중국 전자제품 표준화협회(Chinese Electronics Standardization Association)'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 있다. 7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의견수렴은 해당 협회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으며, 관련 페이지 접속 역시 유료회원에게만 허용됐다. 환경적 사용기간 표시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은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

유해물질 사용 제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행수단에는 ▲우선관리 대상 전자정보제품 목록, ▲ 전자정보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함량치[SJXXXX-200X]: 중국판 유해물질 최대허용기준에 해당, ▲ 무연솔더 : 화학물질 조성 및 형태[SJXXXX-200X], ▲ 전자정보제품 강제인증제도 시행조치가 포함된다. 이중 유해물질 허용기준치를 규정하게 될 표준 제정작업이 제일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라벨링 표준안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함량치에 대한 기준안 역시 중국 표준화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7월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사전인증

사전인증 의무화를 위한 세부 이행수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판 RoHS 법규에서 강제한 사항이어서 '중점관리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장판매 전 시험분석을 거친후 인증획득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관련 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인증은 현재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제도인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중국판 RoHS의 핵심규정과 관련된 이행수단 제정작업 현황을 살펴봤다. 중국의 경우, 법규 제정 및 관련 제반 사항이 모든 과정에서 신속·투명하게 제공되는 EU와 달리 사전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무부처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 단체 등 중국 내 이해관계자를 통한 정보수집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중국 정보산업부, EIAtrack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배터리지침 개정안에 합의



생산자의 폐배터리 무료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회원국의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한 배터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7월 4일, 좀더 높은 수준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을 주장해온 유럽의회가 2차 독회 후 이러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각료 이사회와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지침 개정초안이 발표된 지 2년여 만에 최종안 윤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에는 각료이사회가 조정위원회에서 두 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합의안을 발표했다.

기존 배터리지침(91/157/EEC)이 특정 유형의 배터리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배터리 회수·재활용 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된 개정지침은 그 적용대상을 모든 유형의 배터리로 확대하고,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함과 함께, 환경과 인체에 위해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은 및 카드뮴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지침을 대체하게 될 개정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 형태, 용량, 무게, 재료구성 또는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배터리 및 축전지를 적용대상으로 확대했다(다만, 국가안보 관련 장비 및 우주선에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 둘째, 수은 및 카드뮴 함량이 각각 5ppm, 20ppm을 초과하는 제품은 시장판매를 금지하되, 비상용 알람 시스템, 의료기기 및 휴대용 전동공구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제외된다. 셋째, 회원국에 대해 달성해야 할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목표율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은 전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25%, 그리고 2016년까지 45% 폐배터리 회수율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납 축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및 기타 배터리에 대해 달성해야 할 재활용률을 각각 65%, 75% 및 50%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제품에 분리매출표시(쓰레기통 심벌, crossed-out wheeled bin) 및 수은, 카드뮴 및 납 함유 표시와 함께, 배터리 실제 용량(real capacity) 또는 제품수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지침은 올해 가을쯤에 최종 채택되어 관보를 통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유럽의회, Euractiv



스위스, EU 관련 법규에 자국 화학물질 위험 저감법 부합화 추진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가 자국의 화학물질법을 EU 관련 법규에 부합화할 예정이다. 스위스 '연방 환경·교통·에너지 및 통신부(UVEK)'는 지난 7월 19일, 화학물질 사용제한과 관련해 최근 EU 법규를 반영한 자국의 '화학물질 위험 저감법(ChemRRV, Chemically-Risikoreduktions-Verordnung)' 개정안을 제안했다. EU의 관련 법규 최근 개정사항이 반영된 ChemRRV 개정안은 스위스 산업계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합화 대상이 되는 EU 관련 법규는 ▲ 유해화학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76/769/EEC)에 대한 최근 3번의 개정[타이어제품 내 특정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규제 지침(2005/69/EC), 접착제 등에 톨루엔 등 사용규제지침(2005/59/EC), 압과 돌연변이 유발물질 및 생식독성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지침(2005/90/EC)], ▲ 폐자동차 처리

지침(ELV지침, 2000/53/EC)의 중금속 사용제한 규정 적용예외 및 유예를 규정하는 지침 부속서 II에 대한 최근 2번의 개정결정(2005/53/EC 및 2005/673/EC), ▲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지침, 2002/95/EC)에 대한 최근 4번의 개정결정[유해물질 최대허용치를 규정한 결정(2005/618/EC)과 적용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부속서 개정결정(2005/17/EC, 2005/747/EC 및 2006/310/EC)]이다.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과 관련한 EU법규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해 ChemRRV 개정안에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내 중금속 사용 금지 규정이 면제되는 사항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스프레이 페인트 및 접착제에 톨루엔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타이어 제품 내 PAHs의 최대허용 기준을 EU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 및 전기전자업계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게 될 이 개정안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올해 가을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스위스 UVEK, ElAtrack



미국, 친환경컴퓨터 정보 제공시스템 EPEAT 운영 개시

미국에서 제품 환경성에 기초한 전자제품 선택을 지원하는 전자제품 환경성 평가시스템(EPEAT, 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이 지난 7월 24일, 그 서비스를 개시했다. 미국 연방환경청(EPA)의 지원 프로젝트로 개발된 EPEAT는 정부 등 대량 구매자들이 미리 설정된 환경 기준에 기초해 데스크탑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및 모니터 제품을 평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달지원 시스템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등록 시스템인 EPEAT에는 2006년 7월 현재 Dell, HP 등의 69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 공공기관 등 컴퓨터 제품 대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는 EPEAT 시스템을 이미 미국 국방부, 국토보안부 및 나사 등에서 약 3,200만 달러의 개인용 컴퓨터 구입시 참조함으로써 향후 이를 활용한 미국 내 친환경 컴퓨터 구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PEAT 시스템은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가 개발해 미국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데스크탑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및 개인용 모니터 등 개인용 컴퓨터의 환경평가 표준(IEEE 1680-2006)에 기초해 대상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한다. IEEE 1680 표준에는 환경유해물질 저감 및 제거, 폐기를 고려한 설계, 제품수명, 에너지절약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총 51개의 환경기준(23개 필수기준과 28개 선택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 표준에 따라 평가한 대상제품은 bronze, silver 및 gold 3개 등급으로 표시된다. 필수기준만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bronze 등급이 부여되고, 추가적으로 50%, 75% 이상의 선택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각각 silver, gold 등급이 부여

된다. 이 표준은 EU RoHS 지침의 유해물질 제한규정 및 미국 EPA의 에너지스타 요건을 포함시킴으로써 EPEAT 등록된 제품이 해당 강제법규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EPEAT 시스템의 3개 등급 및 마크

자발적 등록 시스템인 EPEAT에의 등록은 기업이 IEEE 1680 표준에 자사제품이 적합한지 자체검사를 수행하고,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 운영기관인 GEC(Green Electronics Council)의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수료 지불 후 EPEAT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GEC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등록된 제품의 일부를 선택해 IEEE 표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EPA는 테네시 대학과 함께 EPEAT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 에너지 사용저감, 지구온난화가스 배출 감축,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ns) 저감, 원료물질 사용저감 등으로 인한 환경이득을 환산할 수 있는 'Environmental Benefits Calculator'를 개발하고 있다. 이 도구가 개발되게 되면, EPEAT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의 구매로 인한 환경 및 경제적 이득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구매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미국 EPA, GEC, EPEAT



미 워싱턴주,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인산염 사용 제한

미국 워싱턴주가 2008년 7월부터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인산염 사용을 제한한다. 올해 3월 관련 법규를 제정한 워싱턴주의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대한 인산염 규제는 미국 내 최초 사례다.

이 법규에서는 인(phosphorus)을 0.5 무게% 이상 함유하고 있는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3개 카운티(Spokane, Whatcom 및 Clark)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워싱턴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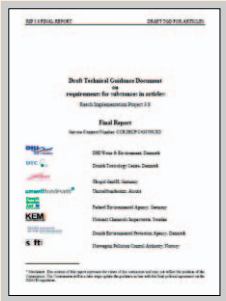
있다. 워싱턴주는 이미 1994년부터 세탁용 세제의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인산염 사용금지를 뜻하는 이번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대한 인산염 사용제한은 가정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용이나 산업용은 제외된다.

세제 및 비료에 사용되는 인은 폐수 등을 통해 강이나 호수, 바다로 흘러 들어가 조류의 성장을 지나치게 촉진시켜 오히려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부영양화를 유발한다.

워싱턴주 내 강이나 호수로 배출되는 총 인산염 중 주방용

<6면 하단>에 계속

➔ EU 집행위, 소비자제품에 대한 REACH 가이드선스 발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말, 소비자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REACH 가이드선스를 내놓았다. 이 가이드선스(REACH Implementation Project 3.8: Draft Technical Guidance Document on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articles)는 REACH 법규에서 완제품(articles) 제조 및 수입업자가 화학물질 등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법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가이드선스는 완제품과 관련해서 REACH 규정의 적용여부 판단 및 의무사항들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완제품을 “화학물질 조성(chemical composition)보다 형태(shape), 표면(surface) 또는 디자인(design)이 그 기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product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소비자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이드선스는 일련의 질문을 통해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완제품의 법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법규 요구사항(법규 제6조 및 30조, 완제품 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통보의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완제품이 REACH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통상 사용조건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6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경계 선상에 있는 특정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REACH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법규 만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정책인 REACH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도구 및 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REACH 이행 프로젝트(RIPs, REACH Implementation Projects)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개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하나가 RIP 3.8로 완제품 내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업계 기술 가이드선스이다. EU 집행위의 주도로 구성된 전문가 컨소시엄에 의해 작성된 가이드선스는 작년 12월 각료이사회가 합의한 REACH 법규안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가 법규 최종안이 나온 후 집행위의 판단에 따라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출처 | EU 집행위, European Chemicals Bureau

〈해외동향〉에 이어서

세제로 인한 인 배출 비율은 5~1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주가 식기세척기용 세제로까지 인산염 규제를 확대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 그 동안 Spokane 강의 오염정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온 워싱턴주는 식기세척기용 세제의 인산염 사용까지 규제함으로써 페수처리와 같은 사후해결 방식보다는 제품 내 사용 제한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미국 비누세제협회(SDA, Soap and Detergent Association) 측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한 식기류의 세정에는 인산염 세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 같은 법규 시행으로 일반 소비자만 고충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수한 세정효과를 나타내는 인산염 세제를 일반 소비자가 더 선호한다는 시험결과가 이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이전에 이미 다른 몇몇 주에서 유사한 법규 제정을 추진했었으나, 소비자 대상 식기세척기용 무린세제(phosphate-

free detergents)의 테스트마케팅 결과 품질 불만족으로 소비자가 외면하는 바람에 해당 법규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아직까지 식기세척기용 무린세제의 경우 그 세정품질에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그 시행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제류의 인산염 사용과 관련해서,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도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지역에서도 법적 또는 자발적으로 인산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지만, 식기세척기용은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세제류의 인산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JBC (Journal of Business Chemistry)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및 아일랜드가 인산염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및 체코는 가정용 세제에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 워싱턴 주의회, 시애틀타임즈

소니, WWF와 선도적인 CO₂ 배출 감축 위한 협약 체결

소니(Sony)사가 세계야생동물기금(WWF)과의 협약에 따라 자사 생산시설 운영 및 제품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로 했다. WWF의 '기후보호프로그램(Climate Savers Program)'에 동참하기로 한 소니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까지 200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를 감축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니는 자사의 모든 생산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연료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재생가능에너지 및 천연가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 시스템에서 지구온난화 영향이 큰 온실가스를 다른 물질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니사의 약속 이행에는 모든 자회사를 비롯해 일본, 중국,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해 세계 도처의 자사 생산시설도 참여하게 된다.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따른 약속이행을 위해 소니사는 그룹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니 측은 밝혔다. 소니는 또한 자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약속하고, WWF와 제품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WWF의 '기후보호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기업의 선도적인 책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존슨앤존슨, IBM, 나이키 등 6개 미국기업을 포함해 총 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소니사가 협약 참여를 서명한 것은, 일본 전자업체로서는 최초 사례다. 출처 | Greenbuzz.com, WWF

EU, 소비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22종의 모발 염색제 사용금지

EU 집행위원회가 22종의 모발 염색제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자문기구인 유럽과학위원회(SCCP)가 일부 모발 염색제의 경우 장기간 사용시 방광암 유발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2003년 4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화장품지침

(76/768/EEC)에 근거한 모발 염색제 관리를 위해 제조자에게 안전성 자료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물질목록(Positive List)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모발 염색제 관리 통합전략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전략의 첫 단계로 집행위는 화장품업계에 대해 안전성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작년 11월 말까지 관련 업계가 115종의 염색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SCCP가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22종 물질의 사용금지 는 업계가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출처 | EU 집행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회담 재개

세계각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4일간의 회담이 열렸다. 일부 선진국들이 오존층파괴 농약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MB, methyl bromide)'에 대해 사용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주장한 2007년 및 2008년 예외적 사용 인정을 반대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12월에 개최되는 UN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메틸브로마이드는 해충 방제에 훈증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농약이다. 또한 각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사염화탄소(CCl₄) 사용 감축 및 개발도상국의 CFCs 점진적 사용중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출처 | ENDS

일본, 가전리사이클법 개정 검토

일본 정부가 가전리사이클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8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일본의 가전리사이클 제도는 '특정 가정용기기 재생품화법(가전리사이클법)'에 근거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5년이 경과했다. 이 법률은 정부에 대해 시행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 법률 시행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에 일본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

이 제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의견수렴은 ▲ 가전리사이클 제도 실시 현황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 문제의 원인, ▲ 해결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실시된다. 가전리사이클법은 가정에서 불필요해진 텔레비전,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냉장고 가전 4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전 메이커에 대해 폐제품 무료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 비용부담을 의무화한 법률로 1998년 5월 제정되었다. 적용대상이 되는 폐가전을 배출하려는 배출자는 폐가전을 소매업자에게 인도하고, 수집운반비용과 재활용 비용을 지불한다. 소매업자는 이것을 인수해 제조업자에게 인도하고, 제조업자는 폐가전을 규정된 목표를 이상으로 재활용(원료로서의 이용 또는 열회수 포함)해야 한다. 재활용률은 중량비로 텔레비전 55%, 에어컨디셔너 60%, 냉장고와 세탁기는 각각 50% 이상 달성해야 한다. 출처 | 일본 환경성

네덜란드, 자동차 환경성에 따라 등록세 차등 부과

네덜란드가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 환경성에 따라 등록세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의 연료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동급 차량 대비 효율 등을 기초로 A부터 G까지 7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친환경 차량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등록세 개편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현재 등록세와 비교할 때, A 등급의 경우 최고 6천 유로(약 720만원)가 인하되는 반면, 일반차량의 A 등급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1천 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가장 환경성이 낮은 G 등급의 경우 약 540 유로(약 64만원)에 해당하는 등록세가 현재보다 더 부과된다. 낮은 등급의 차량에 대해 현재 등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친환경 차량의 생산소비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네덜란드 환경부 대변인은 현재의 등록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네덜란드 VROM

공 지 사 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친환경상품진흥원」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정보

- ① 8.16. ~ 8.17. IPC/JEDEC International Lead Free Conference (캐나다 몬트리올)
- ② 9.10. ~ 9.13. 수송부문 대체에너지 컨퍼런스 (호주 퍼스)
- ③ 9.20. ~ 9.22. EcoProcura 2006: 지속가능 조달 실행방안 (스페인 바르셀로나)
- ④ 9.25 REACH 이행 프로젝트 3 워크샵 - 산업계 가이드선 개발 (벨기에 브뤼셀)
- ⑤ 9.25.~9.26 제8차 런던 재생가능 에너지 재무 포럼 (영국 런던)

2006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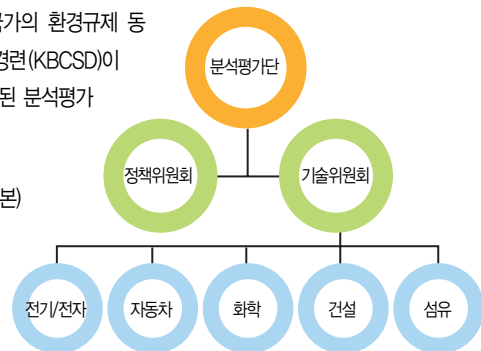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①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6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21	22	23
24	25 ④⑤	26	27	28	29	30

TEN시스템운영체제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친환경상품진흥원,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친환경상품진흥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02-358-6800 (#232) | 팩 스: 02-358-8560 | 이메일: jung60@koeco.or.kr

